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김경숙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
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수정함(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함(안 제2조제2호)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개정의 필요성

-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사용되었던 문화재 용어의 정책적 한계와 분류의 비체계성, 국제기준과의 비정합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유산 개념을 받아들여 국가유산을 위시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의 분류체계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 제명과 개정안 제1조부터 개정안 제9조까지 “문화재

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체제의 일관성 유지와 조례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의견

-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